

# 사회복지직직원관리규정

제정	2008. 2.18	규정 제609호	2016. 4. 5	규정 제794호
개정	2009. 3. 1	규정 제632호	2016. 7.12	규정 제803호
	2009. 7. 8	규정 제635호	2017. 3.10	규정 제848호
	2010. 4. 1	규정 제651호	2017. 4.26	규정 제864호
	2011. 10.1	규정 제680호	2018. 5.21	규정 제931호
	2011.11.17	규정 제682호		
	2012. 5. 7	규정 제704호		
	2013. 4. 1	규정 제714호		
	2013.12. 9	규정 제724호		
	2014. 4. 1	규정 제736호		
	2014. 7.29	규정 제750호		
	2015. 3.31	규정 제765호		
	2016. 2.12	규정 제786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4조의 사회복지직 직원의 고용과 처우 및 복리후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적용범위)** 서비스직 직원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직 직원(이하 “사회복지직”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단에 고용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4.1, 2013.4.1, 2018.5.21.)
2. <삭 제> (2013.4.1)
3. <삭 제> (2012.5.7)
4. “월급”이라 함은 사회복지직 직원이 받는 월 기본급을 말한다. <개정 2018.5.21.>
5. “임금”이라 함은 월 기본급에 수당과 복리비를 합한 급여액을 말한다.
  - 5-1. “본봉”이라 함은 각 등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를 말한다.(신설 2014.4.1)
  - 5-2. “직무급”이라 함은 직책 및 직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신설 2018.5.21.>  
[중전 제5-3호는 제5-3호로 이동<2018.5.21.>]
  - 5-3. “호봉급”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으로 근속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신설 2014.4.1)  
[중전 제5-3호는 제5-4호로 이동<2018.5.21.>]
  - 5-4.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 직무급 및 호봉급을 합한 급여를 말한다.(신설 2014.4.1)<개정 2018.5.21.>
6. “장애인콜택시”라 함은 관계법규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이용고객”이라 함은 관계법규 및 서울시 지침 등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말한다.
8. “이동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간에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9. “운행수입금”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자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받는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금액을 말한다.

10. <삭 제> (2012.5.7)

## 제2장 인사

**제4조(자격기준)** ① 운전원 채용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12.5.7, 2013.4.1)

1. 인사규정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1종 보통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3.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4.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운전정밀검사 합격자 (2009.3.1, 2013.4.1)
5.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2009.3.1, 2013.4.1)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2013.4.1)

② 상담원 채용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규정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전화 교환업무 또는 콜센터 상담원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나. 컴퓨터 활용능력(1~2급) 자격보유자
    - 다.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 기사포함) 자격 보유자
    - 라. 워드프로세서(1~2급) 자격보유자
    -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 [본항신설 2013.4.1]

**제4조의2(초임호봉)** 사회복지직의 초임호봉은 공단 입사 전 경력과 상관없이 입사 시점부터 1호봉을 부여한다. (신설 2014.4.1)(개정 2016.2.12, 2018.5.21.)

**제5조(정년)** 운전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상담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2009.3.1, 2012.5.7, 2013.4.1., 2016.4.5.)

**제6조<삭 제>** (2012.5.7)

**제7조<삭 제>** (2012.5.7)

**제8조(채용<2012.5.7>)** ① <삭 제>(2012.5.7)

② 운전원으로 채용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2012.5.7)

1. 주민등록등본 2부
2. 기본증명서 1부(개정 2009.3.1)
3. 심폐소생술 수료증 1부(개정 2010.4.1)
4. <삭 제>(2011.10.1)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사회복지직 직원의 근로계약은 인사발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5.7)<개정 2018.5.21.>

④ 상담원의 채용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등본 2부
2. 기본증명서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본항신설 2013.4.1]

**제9조(채용절차 및 방법<2012.5.7>) ① <삭 제>(2012.5.7)**

② 사회복지직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충원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2012.5.7)<개정 2018.5.21.>

③ 제2항의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전원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채용신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상담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011.10.1, 2012.5.7, 2013.4.1)

④ 제3항의 시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면접시험의 위원은 3인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011.10.1, 2012.5.7)

⑤ 기타 채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5.7)

**제10조(수습기간<2012.5.7>) ① <삭 제>(2012.5.7)**

② <삭 제>(2012.5.7)

③ 운전원 및 상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2009.3.1, 2011.10.1)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사회복지직 직원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5.21.>
3.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

**제11조(신원조사) ①** 사회복지직을 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조속한 채용이 필요한 때에는 우선 채용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12.5.7, 2013.4.1)<개정 2018.5.21.>

② <삭 제>(2012.5.7)

③ 사회복지직을 다시 채용하거나 신원관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012.5.7, 2013.4.1)<개정 2018.5.21.>

**제12조(채용관리<2012.5.7>)** 사회복지직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기록하여 비치 또는 전산화된 자료로 유지하여야 한다. (2012.5.7, 2013.4.1)<개정 2018.5.21.>

**제13조(징계사유) ①** 사회복지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2011.10.1, 2013.4.1)<개정 2018.5.21.>

1. 직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2011.10.1)
5. <삭 제>(2011.10.1)

6. 무계결근을 하였을 때(2011.10.1)

② 운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한 경우

가. 운행시간 미준수

나. 민원유발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라. 운행거부

마. 교통사고(가해 및 쌍방과실 포함)

바. 운행종료 후 차고지 미입고

사. 고객 하차(빈차)후 승차(주행) 상태로 차량대기 및 운행시

2. 1천만원 이상의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3.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차량을 도난, 망실 또는 임의 처분한 경우

5.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요금미터기 이상의 부당요금을 징수한 경우

6. 이동지원센터의 배차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객을 승차하여 운행한 경우

7. 차량 또는 통신 장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8. 업무명령(직무상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9. 불법 집단행동 등으로 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0.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1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12. 운행수입금 등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 할 경우

[본항신설 2011.10.1]

**제14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 ① 사회복지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양정, 징계절차, 상벌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2011.10.1, 2013.4.1)<개정 2018.5.21.>

1. <삭 제>(2011.10.1)

2. <삭 제>(2011.10.1)

3. <삭 제>(2011.10.1)

② <삭 제>(2011.10.1)

**제15조(승무정지)** ① 운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장이 승무정지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2011.10.1, 2012.5.7)

1. 업무명령(직무상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장애인콜택시 운영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4.7.29)

3.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경우

4. <삭 제>(2014.7.29)

5. 성희롱(성폭력)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6.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2012.5.7)
  - ② 승무정지를 받은 운전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개정 2009.3.1, 2009.7.8, 2010.4.1)
  - ③ 제1항에 의하여 승무정지를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승무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0.4.1)

**제16조(근무성적 평가)** ① 사회복지직의 근무성적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012.5.7, 2013.4.1)<개정 2018.5.21.>

②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12.5.7)

**제17조(당연퇴직 및 의원면직<2011.10.1, 2012.5.7>)** ① 사회복지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개정 2010.4.1, 2011.10.1, 2012.5.7, 2013.4.1, 2018.5.21.)

1. <삭 제> (2012.5.7)
  2. 제5조의 정년에 도달한 때
  3. <삭 제> (2012.5.7)
  4. 운전원이 제4조의 2호 내지 3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 (2013.4.1)
  5. 사망한 때
  6. <삭 제> (2012.5.7)
  7. <삭 제> (2012.5.7)
  8.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본호신설 2010.4.1)
- ② 사회복지직이 원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인사규정 제48조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2011.10.1, 2012.5.7, 2013.4.1, 2013.12.9, 2018.5.2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때 (2012.5.7)
  2.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012.5.7, 2013.12.9)
  3.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2012.5.7, 2013.12.9)
  4.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본호신설 2013.12.9)
- ③ <삭 제>(2011.10.1)
  - ④ <삭 제>(2010.4.1)
  - ⑤ <삭 제>(2011.10.1)

### 제3장 복무

**제18조(준수사항 등)** ① 사회복지직의 복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2013.4.1)<개정 2018.5.21.>

- ②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차량 및 통신장비 등의 사적인 사용 금지
  2. 고의 또는 과실로 차량이 손·망실된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3.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차량 및 모든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종료 후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량일보를 작성하여야 함.
5.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일일점검표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6. 이동지원센터의 통신운영에 따라야 하며, 운행지역을 준수하여야 함.
7.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이외의 요금 징수 금지
8. 차량 운행시간 준수, 근무복장 착용 및 차량내에서 흡연금지(개정 '09.7.8)
9. 당면퇴직 및 의원면직시 차량, 차량운행일보, 근무복 등을 반납하여야 함. (2012.5.7)
10. 차량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조치를 하여야 함.
11. 중상(3주)이상의 사상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사고조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운전정밀특별검사를 수검 후 종합판정표를 제출하여야 함.(개정 2010.4.1)

**제19조(근무시간<2013.4.1>)** ① 사회복지직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2009.3.1, 2013.4.1)<개정 2018.5.21.>  
 ② 사회복지직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지시 또는 사회복지직이 근무시간을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13.4.1)<개정 2018.5.21.>

**제20조<삭 제>** (2013.4.1)

**제21조<삭 제>** (2013.4.1)

**제22조<삭 제>** (2013.4.1)

## 제4장 급여 및 후생

**제23조(임금)** ① 사회복지직의 임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초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2011.10.1, 2011.11.17, 2013.4.1. 2015.3.31, 2018.5.21.)  
 ② 임금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 상여금은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7조를 준용하며,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09.7.8, 2012.5.7)  
 ④ 결근자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0.4.1)

**제24조(임금지급의 특례)** ① 공단은 운전원이 퇴직시 및 의원면직시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의 미납금 납부를 위하여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제된 금액은 90일 이내에 미납금 납부 후 잔액을 정산하여 운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2012.5.7)  
 ②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결근이나 병가 등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적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9.3.1)

**제25조(퇴직금)** ① 사회복지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 제5장(퇴직금)의 기준에 따른

다.(2011.10.1, 2013.4.1)<개정 2018.5.21.>

② <삭 제>(2011.10.1)

**제26조(복리비 등)** 사회복지직의 복지후생을 위한 복리비 등의 지급은 복지후생규정 제7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5.7, 2013.4.1, 2018.5.21.)

**제27조(건강진단)** 사회복지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다. (2013.4.1)<개정 2018.5.21.>

**제28조(제보험 등)** 공단은 사회복지직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2013.4.1)<개정 2018.5.21.>

**제29조(국민연금)** 공단은 사회복지직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3.4.1)<개정 2018.5.21.>

**제30조(피복지급)** 사회복지직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피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2013.4.1)<개정 2018.5.21.>

### 제5장 보칙

**제3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운전원의 정년(63세에서 60세로)은 연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구 분	2009년 정년퇴직	2010년 정년퇴직	2011년 정년퇴직	2012년 정년퇴직
나 이	만 63세(1946년생)	만 62세(1948년생)	만 61세(1950년생)	만 60세(1952년생)
(출생연도)	만 62세(1947년생)	만 61세(1949년생)	만 60세(1951년생)	

#### 부 칙(2009.7.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23조(임금) 제1항과 제4항, 제25조(퇴직금) 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적용) 이 규정에 의한 이동지원센터 상담원의 경우 市の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별도 정책 결정시까지

지 특정직 및 기간직 직원 관리규정을 적용하며, 임금 및 복지후생 등은 특정직 및 기간직 직원 '바'급을 준용한다.

**부 칙(2011.1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 제1항 및 별표1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1.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5. 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2. 5. 1부터 적용한다.

②<삭 제> (2013.4.1)

**부 칙(201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 <별표 1>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단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3조, 제4조의 2 및 제23조 <별표 2> 서비스직 기본급표(2013.1.1일부 적용)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7.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2.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2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4.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7.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5.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용어의 정의) 중 5-2호, 5-3호, 5-4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3조(임금) 제1항의 별표1. 서비스직 기본급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 사항들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23조 관련) (개정 2009.7.8, 2010.4.1, 2011.10.1, 2011.11.17, 2013.4.1, 2014.4.1, 2015.3.31., 2016.4.5, 2017.3.10, 2018.5.2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삭제 2014.4.1)

**서비스직 기본급표(2017.1.1부 적용)**

(단위 : 원)

직급	본봉	직무급	계	호 봉 급			
				호봉	금액	호봉	금액
운전원	644,400	85,600	730,000	1	397,200	19	1,139,500
상담원	562,700	74,300	637,000	2	439,700	20	1,177,100
				3	480,700	21	1,216,200
				4	523,200	22	1,257,200
				5	567,200	23	1,296,300
				6	609,700	24	1,338,800
				7	654,100	25	1,379,600
				8	694,700	26	1,419,100
				9	737,400	27	1,454,600
				10	778,200	28	1,486,800
				11	821,700	29	1,515,700
				12	861,400	30	1,541,600
				13	902,400	31	1,565,200
				14	943,200	32	1,585,200
				15	984,100	33	1,605,200
				16	1,025,000	34	1,625,200
				17	1,062,600	35	1,645,200
				18	1,100,200	36	1,665,200

※ 제수당은 보수규정 제13조를 준용하되, 기술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사회복지직 기본급표(2017.7.1.부 적용)

(단위 : 원)

직급	본봉	직무급	계	호 봉 급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급	1,320,300	994,000	2,314,300	1	397,200	19	1,139,500
2급	1,258,800	758,700	2,017,500	2	439,700	20	1,177,100
3급	1,205,900	606,800	1,812,700	3	480,700	21	1,216,200
4급	1,159,000	478,600	1,637,600	4	523,200	22	1,257,200
5급	1,111,900	302,600	1,414,500	5	567,200	23	1,296,300
6급	1,031,900	133,100	1,165,000	6	609,700	24	1,338,800
7급	950,200	123,400	1,073,600	7	654,100	25	1,379,600
8급	644,400	85,600	730,000	8	694,700	26	1,419,100
9급	562,700	74,300	637,000	9	737,400	27	1,454,600
				10	778,200	28	1,486,800
				11	821,700	29	1,515,700
				12	861,400	30	1,541,600
				13	902,400	31	1,565,200
				14	943,200	32	1,585,200
				15	984,100	33	1,605,200
				16	1,025,000	34	1,625,200
				17	1,062,600	35	1,645,200
				18	1,100,200	36	1,665,200

※ 제수당은 보수규정 제13조를 준용하되, 기술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 <삭 제>(2012.5.7)

<별지 제1-1호> <삭 제>(2012.5.7)

<별지 제2호>(제12조 관련) (개정 2016.7.12.)

## 사회복지직직원 인사기록카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채용 구분	공채, 특채, 기타( )					입사일	전화번호				
	성별	취업보호 대상 장애인					생년월일	호주 및 관계				
	고용 부서						주 소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종교	특기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비고	병역 관계	역종	군별	계급	복무 기간	기타
							재산 사항	동산		부동산		가옥
												자가,차가
							정당, 사회 단체 관계	단체명	직위	가 입 년 월 일	탈 퇴 년 월 일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			학 위	근 무 변 동 사 항	기 간		근 무 지		담당업무
전 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기타 참고사항												